

「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8월 29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가. 고흥군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- 나. 치유농업의 실태조사, 기본계획 수립,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활력 회복과 함께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라. 치유농업 육성지원 등(안 제6조)
- 마. 전문가 자문 등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[붙임 1]

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흥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
2.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
3.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4.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
5.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,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「고흥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치유농업 육성지원 등) ① 군수는 지역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,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,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2. 치유농업 인력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
3.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
4.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·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
5.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·체험·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
6.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·안전·위생 관리
7.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

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전문가 자문 등)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